

무신고 포장지 사용시 제과점 큰 피해 본다

영업 정지 피하려면 식품용기 제조업 신고증 확인해야

■ 취재 / 정한상 jeong@mbakery.co.kr

무신고 포장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인 제과점도 영업 정지 2개월의 엄청난 행정 처분이 내려져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 한 포장업체의 창고에 쌓여있는 천연펄프지.

지난 8월과 9월 포장 및 베이커리 업계는 포장지 문제와 관련해 긴장과 불안감 속에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무신고 포장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판매 업체는 물론 사용자인 제과점까지 행정 처분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법 지식이 부족한 제과점들은 ‘무신고 포장지’라는, 이제껏 듣도 못한 말은 둘째 치고라도 무엇이 단속 사항인지, 행정 처분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안절부절했다. 더구나 사용자인 제과점까지 행정 처분하는 것은 물론 단속될 경우 해당 점포를 영업 정지 2개월에 처한다는 사실은 전대 미문의 일이었기 때문에 불안감과 긴장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베이커리 업계를 긴장 속에 몰아 넣은 ‘무신고 포장지’는 TV광고에 나오는 유명 베이커리 업체가 단속됐다는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지게 됐다. 지난 8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 체인베이커리들이 식품용기 및 포장지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의 제

품을 공급하다 적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결과 이들 업체는 엄청난 과징금 또는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 때까지만 해도 ‘무신고 포장지’ 문제는 이들 업체에 국한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식약청이 9월부터 단속을 일반 제과점까지 확대하기로 예고함에 따라 베이커리 업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포장지 업체에는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과점들이 ‘무신고 포장지’가 무엇이며,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신고 포장지 사용시 제과점도 영업 정지 2개월

식품 포장용기는 식품을 싸거나 넣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부분의 포장 관련 업체들은 식품 안정성 확보에 대한 별다른 의식 없이 포장 용기를 제조했고, 제과점은 비롯한 여타 식품 업계도 아무런 의심 없이 포장재를 구입해 사용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무허가 포장 업체만을 단속

<무신고 식품 포장재 구별 및 유의 사항>

- 자영제과점 확인사항

* 포장재 업체 직거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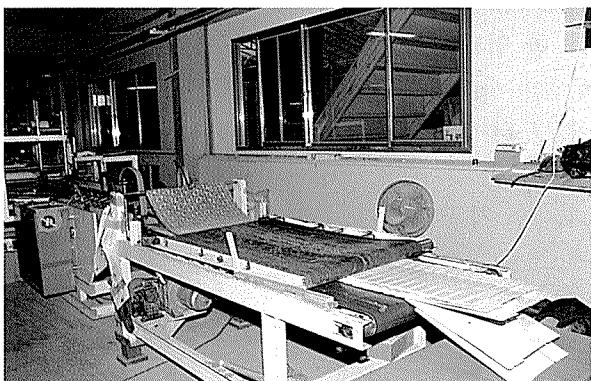
- 해당 업체로부터 식품 용기 제조업에 대한 영업 신고증 확인.

* 재료상 구입시

- 재료상에 식품 용기 제조업 영업 신고를 받은 업체 제품을 공급할 것을 요구.

- 재료상에 포장재 판매 업체에서 받은 영업 신고증 요구.

* 합성수지의 용기·포장은 유통품 구매 사용 시 재질에 따른 표시 기준이 제대로 표기돼 있는지 확인.



해서는 최종적인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아무 생각없이 인체에 유해한 포장용기를 구입해 제품을 포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설령 아무리 무해한 포장재라도 신고조차 안하고 영업하는 업체 제품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라는 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 관계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 무신고 업체 및 포장지를 근절하기 위해 취해진 단속으로 인해 발생했다.

베이커리 업계를 긴장 속에 몰아 넣은 ‘무신고 포장지’ 문제는 열악한 포장 업계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포장지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제지 회사로부터 종이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곳으로 영세하기 짝이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노르지의 경우만 해도 영업 신고증을 갖춘 업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또 무신고 포장업체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쌈 재료만 찾는 소비자의 행태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서울 방산 시장에 있는 한 포장 업체의 경우 식품 포장재 이외의 식품에 쓸 수 없는 제품도 함께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고객들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비 식품용 포장재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포장재 판매업자는 “무엇보다 고객들의 식품에 대한 올바른 의식부재가 제일 큰 문제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납과 같은 중금속과 기타 유해 물질이 용출되지 않아 안전한 대신 단가가 높아 판매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노르지의 경우 식품용이 일반 제품에 비해 3배정도 비싸 고객들에게 외면 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안전성보다 가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업체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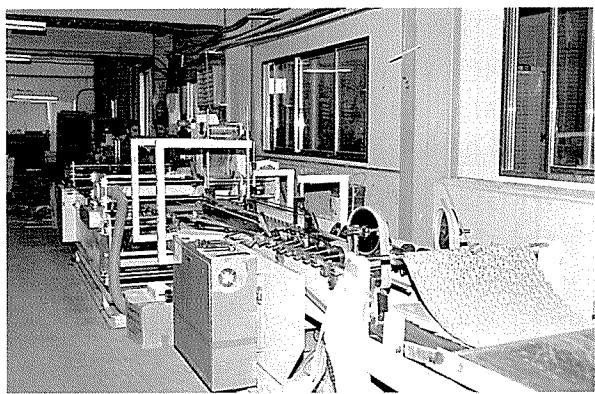
포장재는 크게 비닐과 종이로 나눌 수 있는데 비닐의 경우 대부분 PP, OPP재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종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천연펄프 이외에는 식품에 쓸 수 없도록 돼있다. 그렇지만 이제 까지 관례상 100% 천연펄프 보다는 다른 종이가 섞이거나 심지어 전혀 식품에 쓸 수 없는 종이로 케이크 박스를 제조하는 곳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세한 업체 대부분 영업 신고 안해 문제 발생

이에 대해 포장재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비닐과 달리 케이크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장시설이 필요한데 영세 무허가 업자의 경우 변변한 공장시설이 없어 모든 것을 하청에 의해 제조한다. 따라서 팬시, 의류 등의 상자를 제조하는 곳에 OEM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고 최종 마무리만 수작업으로 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식품에 대한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의식조차 없는 곳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규모가 영세하고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가 많은 현실이다. 또한 이제 까지 무신고 포장재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고, 설령 단속에 걸려도 쉬었다가 다시 활동하는 일명 “게릴라식 전술”로 활동해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도 ‘무신고 포장지’를 있게 한 원인이다.

그 결과 사용자인 제과점에서까지 불똥이 튀게 된 것이다. 식약청의 단속으로 ‘무신고 포장지’를 판매하는 업체는 물론 이를 사용하는 제과점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무신고 포장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인 제과점도 영업 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두 달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처벌인 셈이다.



따라서 식약청의 이번 ‘무신고 포장지’ 단속과 제재는 사안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무신고 업체의 근절을 위한 목적은 누구나 수긍할 사항이지만 영업 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 처분은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무신고 포장지 업체를 찾아내 근절시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사용자에게까지 무신고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업체를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잘못이 없는 사용자에게까지 점포문을 닫게 하는 조치는 누가 보아도 지나친 처사라는 주장이다.

현재 노르지의 경우 형광물질이 없는 식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제지업체가 중앙제지, 동양 등 2곳에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식약청의 이번 단속은 포장지의 유통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애꿎은 제과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큰 대형 업소를 제외하곤 노르지 같은 소품의 경우 제과점은 포장지 판매 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는다. 중간 유통 단계인 재료상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과점은 자신이 쓰고 있는 노르지 같은 포장지가 무신고 제품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불의 피해 막으려면 영업 신고증 확인해야

식약청의 이번 단속으로 정상적인 포장 업체도 한동안 거래 업소에 영업 신고증을 팩스로 일일이 보내주는 소동이 있었다. 또한 거래 업체에 따라서는 자가 품질 검사 사실을 요구해 1주일 걸리던 규격

심사가 한 때 3주가 걸리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다행히 식약청의 이번 단속과 강력한 행정 처분으로 업체들 대부분이 영업 신고를 마쳐 뜻하지 않게 제과점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업체는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과점에서는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상거래상 제과점은 포장재 판매 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재료상을 통해 신고를 한 업체의 제품만을 공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재료상에게서 포장지 판매 업체로부터 받은 영업 신고증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밖에 최근 들어서는 포장재의 표시 기준이 누락되거나 틀린 경우에도 단속하고 있는 설정이므로 정확하게 표시 기준 사항이 표기된 제품을 재료상에게 요구해야 필요성이 있다.

이번 식약청의 단속은 일차적으로 무신고 포장지의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식품 안전 차원에서 앞으로 포장 관련 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이미 샌드위치 용기 등에서는 PET 재질이 아닌 PVC 재질을 사용할 경우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케이크 박스의 경우 예전에는 케이크와 직접 맞닿은 바닥재만 규격에 맞으면 단속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케이크가 닿을 가능성이 있는 박스 부분도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상사와 양지디자인포장의 경우 강화된 규격에 맞지 않는 일부 식품 포장재의 출고를 전면 금지시키고 천연 펄프지로 대처하는 긍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포장재 기준이 강화되면서 제과점이 포장재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단속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무신고 포장지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무신고 포장지와 관련해 영업 신고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제과점에도 영업 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 처분을 내리는 이번 식약청의 단속은 과도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제과점이 법에 명시된 사항을 피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세심한 주의와 확인을 통해 무신고 포장지로 인한 행정 처분을 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